2015년 3월 6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
*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3월 5일(목) 12:00 이후 보도 가능

www.smba.go.kr

성장징검다리 중소기업청 Small &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

보 도 자 료

경제혁신 3개년 계획 3년의 혁신, 30년의 성장

• 문의 : 중기청 소상공인정책과 조종래 과장, 곽재경 사무관, 유정민 주무관(042-481-8923)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원기 실장(042-363-7901)

소공인의 기술개발로 창조경제의 뿌리를 튼튼하게!

– 중기청, 소공인 전용 기술개발에 63억원 지원 –

□ **중소기업청(청장 한정화)은** 우리나라 제조업의 뿌리 역할을 수행하는 소공인*의 기술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**소공인 전용 기술개발 지원사업**을 추진한다고 밝혔다.

* 소공인: 제조업을 영위하는 10인 미만의 사업체

□ 동 사업은 정부 지원제도에 대한 **정보력이 부족**하거나 서류작성 부담으로 **사업신청**에 **어려움을 느끼는 소공인의 참여를 확대**하고자 전문가의 진단에 따른 **단계별 서비스**를 제공할 예정이다.

○ **1단계**에서는 기술혁신 수준을 진단하고 신청과제에 대한 사업 지원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해주는 **기술진단*** 서비스를 제공하고

* 기술혁신 수준 및 신청과제 지원필요성 등을 무상 지원(350개 과제 내외)

○ **2단계**에서는 전문가가 소공인을 방문, 상담을 통해 기술개발 수행에 따른 **사업계획서 수립***를 지원한다.

* 서면평가를 통과한 과제에 대해 사업계획 수립 무상 지원(200개 과제 내외)

○ 소공인 기술개발 지원 대상으로 최종 선정된 100여개사에 대해서는 최종 지원과제(100개 과제 내외) 수행을 위해 개발기간(6개월)

동안 소요되는 **인건비, 연구장비·재료비, 위탁개발비, 기술자문비**를 정부지원금 **5천만원*** **한도**내에서 지원한다.

* 총사업비의 25% 이상 자부담 필수(총사업비의 75%까지 지원)

□ 소공인이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며, **단독**으로 또는 **협력기관***과 **공동**으로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.

* 중소기업, 대학 또는 위탁연구기관(대기업, 협동조합, 지자체를 제외)

○ **신청기간**은 **3월 6일부터 4월 3일까지**이며, 신청을 희망하는 소공인은 지원제외 사항*을 확인한 후, **사업신청서**(1페이지)와 **자가진단표**(1페이지)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제출하면 된다.

* 주관기관 자격 요건에 부합하지 않거나, 최근 1년간 공정거래법에 따른 불공정행위자인 경우, 채무불이행 및 휴·폐업자 등

□ 본 사업에 대한 공고와 신청·접수는 중소기업청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(http://www.smba.go.kr), (http://www. semas.or.kr)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< 붙임 > 소공인 기술개발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문 1부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
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과 곽재경 사무관(☎ 042-481-892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[붙임]

『2015년 소공인기술개발』 주관기관 모집 공고

중소기업청·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공인의 신기술 개발, 제품·공정 개선 등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이 『2015년 소공인기술개발』 주관기관 모집 계획을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
2015년 3월 6일

중소기업청장

1. 사업개요

□ 사업목적

○ 소공인 전용 R&D사업을 마련하여, 기술·제품 개선을 위한 계획 수립, 과제개발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통해 기술경쟁력 향상

* 소공인 :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자

□ 사업기간 : ‘15. 2 ~ 12월

* 과제개발기간 : 협약체결일 ~ ‘15. 12. 31일 이내

□ 지원규모 : ‘15년 63억원

□ 지원대상 : 소공인 (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자)

□ 신청과제 : 소공인이 제안한 일반과제(자유응모형 단기과제)

□ **지원분야**(택일) : ① 신기술 개발 분야, ② 제품·공정개선 분야

* 제품개선 : 기존제품의 품질향상을 통해 매출액 신장, 시장점유율을 제고

** 공정개선 : 생산시간, 절차, 비용 등의 절감(기존 ①→②→③, 개선 ①→③)

□ **지원금액** : 과제당 50백만원 한도, 총 개발비의 75% 이내 보조

* 자부담은 총 사업비의 25% 이상(현금 또는 현물)

** 과제내용, 기간 등을 고려하여 100개 과제 내외 선정·지원

□ **지원내용** : 소공인 특성을 고려 3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 지원

○ **1 단계 : 기술(혁신)진단 지원**(350개 과제 내외)

- 진단전문가가 현장방문을 통해 소공인의 기술혁신 수준 및 신청과제 지원 필요성 등 기술진단을 전액 무료로 지원(최대 2MD)

* 사전진단(1MD)과 기술진단(1MD)으로 구분(불 필요시 사전진단만 수행)

○ **2 단계 : 사업계획서 수립 지원**(최대 200개 과제)

- 서면평가를 통과한 우수한 과제를 전문가가 방문, 상담 등을 통해 사업계획서 수립을 지원, 소공인의 행정 부담을 경감(10MD)

○ **3 단계 : 과제개발비(R&D) 지원**(100개 과제 내외)

- 발표평가를 통과한 최종 소공인 지원과제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과제개발비*의 75% 이내 지원

* 지원항목 : ① 인건비, ② 연구장비·재료비, ③ 위탁개발비, ④ 기술자문비

□ **추진절차**

신청접수	→	(1단계) 기술진단	→	1차 평가	→	(2단계) 사업계획수립	→	2차 평가	→	(3단계) 개발비
소공인→소진공 (350개 내외)		전문기관 →소공인		서류 (200개)		전문기관 →소공인		발표 (100개)		소진공→ 소공인

2.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

□ **신청자격** : '주관기관 단독' 또는 '협력기관과 공동' 개발 가능(택일)

○ **(주관기관)** 아래의 신청요건(①~④)을 모두 갖추고 제조업을 영위하며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자

<주관기관 자격요건 >

요건		세 부 내 용
1	상시근로자	○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
2	업 종	○ 「통계법」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'제조업'을 영위
3	자부담비용	○ 자부담비용을 총 사업비의 25% 이상 제시(현금 또는 현물) * 총사업비(100%) = 정부지원금 75% + 민간부담금 25%
4	정부사업 참 여	○ 신청일 기준으로 정부·지자체의 기술개발 사업에 참여중인 사업자는 신청불가 (선정 후 적발 시 협약취소)

○ **(협력기관)**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개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, 대학 또는 위탁연구기관 (대기업, 협동조합, 지자체는 참여 불가)

□ **지원내용**

○ 정부보조금 : 총 사업비의 75% 이내(최대 50백만원 한도)

○ 민간부담금 : 총 사업비의 25% 이상 부담(현물 또는 현금)

□ **지원조건**

○ 개발기간 6개월 내외(~'15.12월)로, 5천만원 한도 내 차등 지원

* (항목) ① 인건비, ② 연구장비·재료비, ③ 위탁개발비, ④ 기술자문비

○ 별도 기술료는 없음

○ 주관기관은 정부지원금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수

◈ 지원제외 사항

① 주관기관 자격 및 지원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

② 주관기관이 신청일 기준 기술개발사업에 참여 중이거나,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법에 따른 불공정행위 위반자인 경우

③ 접수 마감일 현재 「기업의 부도, 휴·폐업」 중이거나, 국세·지방세 체납,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

3. 선정절차

□ **(1단계 : 서류평가)**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운영하여 서류(서면)평가 실시

* 신청과제 중에서 최대 200개까지 1차 선정하여 사업계획서 수립을 지원

** 평가항목(안) : 과제개발 필요성, 과제개발내용의 적절성 등

□ **(2단계 : 발표평가)**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계획서를 발표평가하여 최종 100개 내외를 선정

* 발표자료는 기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활용

** 평가항목(안) : 추진의지, 보유기술 고도화 가능성, 부차가치 창출 가능성 등

< 세부추진절차 및 일정(안) >

신청·접수	1단계(기술진단)	서류평가	2단계(계획서)	과제추천
소공인 →소진공	전문기관 →소공인	평가위원회 (최대 200개)	전문기관 →소공인	전문기관 →소진공
3.6~4.3	4.6~4.20	4.20~4.24	4.27~5.20	5.21~5.22

발표평가	계획서 보완	협약체결	사업수행	결과보고
평가위원회 (100개 내외)	소공인↔소진공	소공인↔소진공	소공인	소공인→ 소진공
5.27~6.3	6.4~6.16	6.18	6.18~12.31	'16.1월

4.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

□ **신청기간** : '15년 3월 6일(금) ~ 4월 3일(금), 18:00까지

※ 주의사항 :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접수 목표(최대 350개 과제)를 달성한 경우에는 신청기간 중이라도 조기마감 될 수 있음

□ **신청방법** : 등기우편 및 방문신청(마감일 18:00시 도착분에 한함)

□ **신청서류** : ① 사업신청서 1부, ② 자가진단표 1부

□ **접 수 처** :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46, 대림빌딩 3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(우301-722)

5. 유의사항

○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서류상 기재착오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

○ 신청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신청 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였으나, 최종 선정된 업체는 추가로 증빙서류 등을 제출할 수 있음

6. 문의처

○ 문의처 :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(042-363-7915, 7917)

○ 홈페이지 : 중소기업청(http://www.smba.go.kr)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(http://www.semas.or.kr)

< 첨부 > 1. 지원대상 업종 2. 사업신청서 3. 자가진단표

[첨부 1]

소공인 기술개발 지원대상 업종

구 분	해당 업종(중분류,24개)	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
제조업 (대분류)	식료품 제조업	10
	음료 제조업	11
	담배 제조업	12
	섬유제품 제조업; 의복제외	13
	의복,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	14
	가죽, 가방 및 신발 제조업	15
	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; 가구 제외	16
	펄프,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	17
	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	18
	코크스,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	19
	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; 의약품 제외	20
	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	21
	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	22
	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	23
	1차 금속 제조업	24
	금속가공제품 제조업; 기계 및 가구 제외	25
	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	26
	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	27
	전기장비 제조업	28
	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	29
	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	30
	기타 운송장비 제조업	31
	가구 제조업	32
	기타 제품 제조업	33

[첨부 2]

2015년도 소공인 기술개발 지원사업 사업신청서

과 제 명	*수행할 과제의 개발과제명을 구체적으로 기재*			
지원분야	※ 해당하는 분야에 (√) 표시(중복 불가) ☐ 신기술 분야 ☐ 제품·공정개선 분야			
기술수준	☐ 상(上) ☐ 중(中) ☐ 하(下)			
보안등급	☐ 보안과제 ☐ 일반과제			
주관기관	기 관 명		홈 페 이 지	
	설립년월일	(업력)	상시근로자수(명)	
	업 종	(분류기호 :)		
	사업자등록번호		법인등록번호	
	주 소	*사업장 주소를 구체적으로 명기(진단전문가 현장방문을 위해 매우 중요)*		
	주생산품			
대표자 (소공인)	성 명		생년월일	년 월 일
	성 별	☐남성 ☐여성	휴대전화	
	팩 스		전 화	
개발내용	*제품·공정 개요* *기술개발 추진내용* *추진계획 및 소요비용 등*			

'15년도 소공인 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의 규정에 따라 동 사업을 수행하고자 사업신청서를 제출합니다

2015년 월 일

주관기관 대표자 : (인)
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

[첨부3]

『2015년도 소공인 기술개발 지원사업』
주관기관 자가진단 체크리스트

◆ 주관기관 지원자격 체크리스트에서 1개 이상 해당될 경우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됨

	내 용	검토 결과	
1	○ **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여부** 최근년도 4대 보험신고서 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을 확인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지 여부를 검토 * 상시근로자 : '14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((2014년 매월 상시근로자수 합)/12) *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, 법인의 경우 등기된 이사는 상시근로자수에서 제외 처리	적	부
2	○ **소공인 지원대상업종 여부** 제조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검토 * 확인근거(증빙서류) : 사업자등록증 등 * 주된 업종의 판단은 하나의 기업이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판단함	적	부
3	○ **참여제한 여부** 현재 정부 또는 지자체 기술개발사업에 참여중인 경우 (참여중이면 '부', 미참여 시에는 '적')	적	부
4	○ **기업의 부도, 휴·폐업 여부**	적	부
5	○ **국세·지방세 체납 여부**	적	부
6	○ **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여부** (단,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의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제외)	적	부